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8월 11일

국 무 총 리 정 세 군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장

이 재 갑

●**대통령령 제30931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노동조합: 시·도 단위로 설립신고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 개별학교 단위 또는 시·도 단위로 설립신고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하나의 시·도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 개별학교 단위로 설립신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조의2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려는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 요구 사항 및 조합원 수(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등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교육부장관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시·도 교육감
 4. 국·공립학교의 장
 5.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제1항제5호의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교섭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한다.

- ③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단체교섭에 참여하려는 관련된 노동조합은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 ⑤ 상대방은 제4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 그 공고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⑥ 교섭노동조합과 상대방(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은 제5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의2에 따라 교섭위원의 선임이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에게 교섭 내용, 교섭 일시·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
- ⑦ 상대방은 제4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교섭위원의 선임) ① 교섭노동조합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이하 “교섭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이 법 제6조제6항에 해당하면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② 교섭위원의 수는 교섭노동조합의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명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할 때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했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산출된 교섭위원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전단에 따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섭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의 선임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⑤ 교섭노동조합이 제3항에 따른 조합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의 수는 제3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수로 하되,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조합원 1명에 대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명단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지체 없이 해당 교섭노동조합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한다.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한다.

⑥ 교섭노동조합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에 대하여 이견이 계속되거나 제4항에 따른 기간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합원 수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조합원 수의 확인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제3조제5항에 따라 공고된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

제5조 전단 중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상대방에게”를 “교섭노동조합에”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각각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로,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33조제1항제10호·제12호·제13호”를 “제33조제1항제10호·제12호·제13호·제14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또는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 2020년 6월 9일 이후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단체교섭이 요구되어 그 교섭이 진행 중인 경우 그 교섭 절차 등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교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 및 그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고, 복수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교섭위원의 선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 교원의 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제2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설립한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은 개별학교 단위의 산하조직 또는 시·도 단위의 산하조직을, 하나의 시·도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개별학교 단위의 산하조직을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 단체교섭 요구 및 관련 절차 정비(제3조)

-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등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려는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 요구사항 및 조합원 수 등을 적은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2)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교육부장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등은 관련된 노동조합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
- 3) 단체교섭에 참여하려는 관련된 노동조합은 교육부장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등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함.

다. 교섭위원의 선임(제3조의2 신설)

- 1) 교섭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교육부장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등이 그 교섭노동조합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섭위원을 10명 이내로 선임하도록 함.
- 2)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일정한 기간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임하도록 함.
- 3) 교섭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조합원 수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의 수는 교육부장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등이 교섭노동조합을 공고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수로 하되, 조합원 수에 대하여 이견이 계속되면 교섭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조합원 수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일부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알려주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8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

문성혁

●**대통령령 제30932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